

농식품부,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 개식용 조기종식을 위한 전·폐업 지원 등 기본계획 마련 -

- 개식용 업계 5,898개소의 차질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
- 농장주 조기 전·폐업 이행 노력에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등 인센티브 제공
- 개식용종식 사회적 공감대 확산, '27년 이후 개식용 행위 단속 철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7년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였으며, 지난 9월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위원장: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를 통해 기본계획을 심의하여 확정하였다.

기본계획은 2027년 개식용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하여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한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개소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정부는 업계의 차질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25 정부예산(안))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총 1,095억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25년 지원 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24.12월 최종 확정 예정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단, 사육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 분뇨 배출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신고 면적(m) × 면적당 적정 두수(1.2마리/m)

이 외에도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점포 철거비('24년 최대 250만원, '25년 이후 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25년 최대 190만원) 등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최대 250만원)할 계획이다.

둘째, 차질 없는 개식용종식 이행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약 46.6만 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관리한다.

또한 전·폐업 이행에 애로를 겪는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 타 축종 전환 희망 농장 현장 맞춤형 전업 컨설팅(농식품부), 전업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대상 식품위생 컨설팅(식약처), 폐업소상공인지원사업 연계 폐업 컨설팅(중기부)

셋째,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개 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망뿐만 아니라 개식용 소비 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하여 개식용종식에 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한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27.2.) 종료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동물 학대 사건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하는 등 「개식용종식법」을 포함한 여타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행정에 임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붙임 1.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2.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요약)
3. 개식용종식 위원회 개요

담당 부서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	책임자	과 장	손경문 (044-201-2280)
		담당자	사무관	장래현 (044-201-2283)
<협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010)
		담당자	사무관	이 성 (043-719-2030)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붙임 1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인포그래픽

2027년 개식용종식 달성

추진 목표	전·폐업 업계 안정적 경제활동 유지	식용 목적 사육건 ZERO화	국민 인지도 향상 공감대 형성
	'27 50% *27 50%	'24 46만 6천 마리 '27 0	'24 39.7% '27 80%

01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장주의 자발적 조기 종식 이행 촉진을 위해 폐업시기별 차등지원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전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장주 폐업이행촉진금 지급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 지원 전업 시 시설·운영자금 저리 융자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점업자 전·폐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업소상공인지원사업 연계 철거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 메뉴·취급 식육 변경 등 전업에 따른 시설·물품 교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취업수당·재창업사업화자금 지원 메뉴·취급 식육 변경 시 시설 교체 지원
--	---

02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전·폐업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업에 애로를 겪는 영세·고령농을 위한 현장 맞춤형 컨설팅 유통상인 및 식품점업자 폐업 컨설팅 지원으로 폐업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장주 현장 맞춤형 전업 컨설팅 법률 자문 및 사업절차 컨설팅 식품위생 정보제공 및 컨설팅 	식용 목적 사육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장주 책임 하 잔여건 발생 최소화 개 사육규모 선제적 감축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건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보호·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육 규모 모니터링 및 조기 감축 농장주 소유권 포기권 보호·관리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 	종식 이행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한 내 차질 없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폐업 이행상황 정기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계 전·폐업 이행상황 분기별 점검 적발 행위 대상 이행명령 및 과태료 부과
--	---	--

03 사회적 공감대 형성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종식 이행을 위한 국민 협조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식용 소비 종식 캠페인·홍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제고 교육 개식용종식 긍정적 효과 대외 홍보 	종식 이후 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식 이후 철저한 단속을 통해 음성적 운영을 반듯없이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반 운영 음성적 운영 행위 단속 및 엄중 조치
---	--

붙임 2 |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요약)

I. 추진 배경

- 동물복지 선진국 도약을 위해 개식용종식을 **국정과제***로 채택('22)
* (국정과제 48-7) 반려동물 생명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에서 개식용종식에 관해 정부,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논의 지속 추진**(총 23차례 논의, '21~'23)
* 육견 관련 단체,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정부 위원 등 21명으로 구성
- 초당적 합의를 거쳐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제정('24.2.6. 공포)
 - 「개식용종식법」에서 규정한 **종식 기한('27.2월) 내** 원활한 개식용종식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시책 수립 필요**

II. 관련 산업 현황 및 진단

1 | 업계별 산업 현황

- (**사육업**) 대부분 영세 **고령농**으로 타 축종 병행 사육 비중이 작고 개 사육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여 전·폐업 이행에 애로(총 1,537개소)
* 연 300마리 이하 사육 56.1%, 65세 이상 53.6%, 타 축종 병행 사육 21%, 평균 종사기간 17.6년
- (**도축업**) 다수 도축상인이 **오랜 기간 개 도축업에 종사**하며 **고령화**, 타 축종 도축 병행 비중이 작고 전업 희망 의사도 저조(총 221개소)
* 평균 종사기간 26.4년, 60세 이상 67.9%, 타 축종 도살 병행 13.7%, 전업 희망 비율 22.5%
- (**유통업**) 타 축산물 등 병행 취급 비중이 높고 전업이 용이한 여건, 취급 축산물 등 전환을 통한 **전업 희망** 비율도 높은 편(총 1,788개소)
* 타 축산물 등 병행 취급 비중 90.9%, 전체 유통상인 중 개 원료 식품 판매 영업자(과일즙, 흑염소추출액 등 함께 취급하는 건강원) 74.2%, 전업 희망 비율 79.4%
- (**음식점**) 개고기 외 다른 메뉴를 함께 취급하는 **겸업 비중이 높아 전업에 대한 현장 부담감이 낮은 편**, 전업 희망 업자 상당수(총 2,352개소)
* 개고기 이외 메뉴 병행 취급 비중 91.8%, 전업 희망 비율 80.9%

2 | 개식용종식 여건 진단

- (**종식 이행 여건 조성**) **소** 업계(5,898개소*)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 농장 1,537개소, 도축상인 221개소, 유통상인 1,788개소, 식품접객업자 2,352개소
- (**합리적 지원 필요**) 다수 업계는 **유예기간(~'27.2) 운영 지속을 희망**하며 전·폐업 애로 호소, **원만한 종식을 위해 합리적 지원방안 제시 필요**
 -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는 약 **46.6만 마리('24.8)**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관리 없이는 법정 기한('27.2) 이후에도 **상당 규모 잔여 가능성**
- (**오랜 사회적 요구**) 전 세계적으로 개를 식용 가축이 아닌 **반려동물로 인식**, 오랜 기간 국내외적으로 **개식용 금지를 요구**
- (**인식 개선 필요**) 개식용 관련 **다양한 사회적 문제** 잠재에도 국내 개고기 **소비층 일정 수준 유지**, 종식 달성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필요**
* ('24년 인식조사(케이스탯)) “현재 개고기 섭취” 12.8%, “개식용종식법 인지” 39.7%

III. 주요 추진과제 및 방향

가. 조기 종식을 위한 업계 유인책 마련

- 사육업·도축업은 전·폐업 **난도가 비교적 높고**, 겸업 비율이 낮으며, 일정 규모 **전문시설 조성 필요** 등 감안하여 **폐업지원 중심 접근**
* 생계안정 목적 폐업지원금은 영업 행위가 불법이 아닌 사육업에 한정 지원
- 유통업·음식점은 메뉴·취급 축종 변경 등을 통한 **전업 난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겸업 비율이 큰 점을 고려하여 **전업 중심 지원**

나. 전·폐업 이행 장벽 해소를 통한 원활한 종식 이행

- 업계의 전·폐업 애로 해소 지원과 동시에 **법적 의무 준수 여부 점검**
- 개 사육 규모는 **농장주 책임** 아래 체계적으로 감축토록 **제도적 장치** 마련

다. 개식용종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국민 협조 유도

- 종식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며 긍정적 효과 적극 홍보
- '27.2월 이후 개식용 목적 운영 행위를 철저히 **단속·점검**

IV. 비전, 목표 및 추진 전략



V. 과제별 추진계획

1 |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가. 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 **지원 조건:**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른 **폐업 이행**(농장주 전체 출하 이행 필수) 및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확인, 시설물 평가 및 철거 완료 후 지원금 지급
 - * '24년 내 폐업이 완료된 경우 시설물 감정평가는 당해 연도에 실시하되 철거 대행, 감정평가 비용 및 지원금(폐업이행촉진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액) 지급은 '25년에 실시
- **지원 내용** ※ '25년 지원 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24.12월 최종 확정 예정

- ① **(폐업폐업이행촉진지원금)** 농장주에 한정하여 사육 마릿수(연평균, 신고 기준)당 폐업 시기 구간별 22.5~60만원 지원(농식품부, '25~'27)
 - * 단, 「가축분뇨법」(배출시설 미신고) 및 「건축법」(시설물 무허가미신고) 위반 확인 시 지원 배제

◆ 지원기준 : 사육마릿수 × 폐업 시기별 지원단가 × 조정률

☞ (사육마릿수) 신고한 연평균 사육마릿수 기준(단, 적정 사육두수*를 상한으로 적용)
 * (적정 사육두수)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신고면적(m²) × 면적당 적정 두수(1.2마리/m²)

☞ (지원단가) 폐업 시기 구간별 지원단가(30만원×지원기간) 차등 적용

폐업시기 구간	'24.8.~'25.2.6.	'25.2.7.~'25.8.6.	'25.8.7.~'25.12.31.	'25.12.32.~'26.5.6.	'26.5.7.~'26.9.21.	'26.9.22.~'27.2.6.
지원단가(지원기간)	60만원(2년)	52.5만원(1.75년)	45만원(1.5년)	37.5만원(1.25년)	30만원(1년)	22.5만원(0.75년)

* 「개식용종식법」 공포('24.2.6.) 이후 법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시행('24.8.7.) 이전까지 폐업한 농가 포함

☞ (조정률) 농지 전용 미신고 등 「농지법」 위반 확인 시 50% 감액 적용

- ② **(폐업시설물 잔존가액)** 폐업 지원 신청일 이후* 시군구 의뢰 감정평가로 산출한 개 사육·도축시설(건축물, 설비 등) 잔존가액** 지급(농식품부, '25~'27)
 - * 사전 철거 등 감정평가 불가 시 지원 불가 ** 감정평가법인 2개소 평가 금액 산출 평균
- ③ **(폐업시설물 철거)**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대행 지원(농식품부, '25~'27)
 - * 단, 「건축법」(시설물 무허가·미신고), 「농지법」(농지 전용 미신고), 「가축분뇨법」(배출시설 미신고) 위반 확인 시 지원 배제 및 자부담 철거 원칙
- ④ **(전업시설·운영자금 지원)** 농업 전업 및 도축 축종 전환 시 관련 시설 및 운영자금 저리 융자 사업 연계 지원(농식품부, '25~)
 - * 축사시설현대화^{용자}, 농업자금이자보전-원예·축산업^{용자},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용자}

나.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전·폐업 지원

- **지원 조건**: 제출한 이행계획서대로 '27.2.6일까지 폐업 혹은 업종·메뉴 변경 등 전업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 시 지원
- **지원 내용** ※ '25년 지원 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24.12월 최종 확정 예정
 - ① **(폐업소상공인지원) 철거비 및 재취업·재창업 지원**(중기부, '25~)
 - 폐업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 비용 최대 400만원 지원
 - * 소상공인 요건 충족 및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지원 / '24년까지는 최대 250만원 지원
 - 폐업 이후 원활히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지원 및 수당 지급
 -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시 최대 6개월간 월 50~110만원 훈련참여수당(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대상, 고용부+중기부 수당 합산) 및 취업성공수당 최대 190만원 지급
 - 재창업 희망 시 전담 관리자 1:1 매칭 및 밀착관리 중점 추진
 - * 재창업 의지와 성장가능성이 평가 후 선발된 경우 재창업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
 - ② **(시설·물품 교체 지원) 메뉴·취급 식육 종류 변경 시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 최대 250만원 지원**(식약처, '25~'27)

2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가. 전·폐업 컨설팅

- **(전업 컨설팅)** 전업 후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한 컨설팅 지원
 - 타 축종 전환 사육을 위한 경영 능력 분석, 전문기술 지도 및 행정 분야 상담 등 **농장주 현장 맞춤형 전업 컨설팅**(농식품부, '24~)
 - * (컨설팅 지원단) 국립축산과학원, 농협 친환경컨설팅방역부, 지자체 전문가 등 300여 명
 -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전업 후 위생 수준 진단 및 위생 지도 등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식약처, '25~'27)
- **(폐업 컨설팅)** 소상공인 해당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대상 법률 자문* 및 사업 정리 컨설팅** 등 폐업 컨설팅 지원(중기부, '24~)
 - * 임대차, 세무 등 관련 법률 자문 및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
 - ** 재기전략·세무·부동산·심리·직무직능 중 최대 3개 분야 전문가 1:1 컨설팅

나. 식용 목적 사육건 관리

- **(사육규모 감축)** 증·입식 중단, 사육 감축 등 농장주 이행계획서 구체화, 감축관리 미흡 시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농식품부·지자체, '24.9~'27.2)
- **(소유권 포기건 보호·관리)** 농장주 사육 포기*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여건은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인수하여 보호·관리(지자체, '24.9~)
 - * 농장주가 개에 대한 소유권 포기 시 농장주 책임 하에 사육규모 감축 등 개체관리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폐업이행촉진지원금 등 폐업 지원 대상으로 불인정
 - 지자체는 개의 소유권을 인수하는 경우 농장주에게 보호 비용 청구 등 조치 후 「동물보호법」에 따른 분양 지원 등 보호·관리*
 -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수용 여력 미흡 시 소유권은 지자체가 보유하되 임시적으로 농장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보호·관리
- **(동물 보호 인프라 확충)** 개 사육 규모 대비 보호 인프라 미흡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우선 확충(농식품부·지자체, '24~)
 - * '23년 71개소 → '24년 84개소(광주 1개소, 경기 3, 강원 3, 충남 1, 전남 1, 경북 1, 경남 3 신규 준공 예정)

다. 종식 이행 점검

- 「개식용종식법」 위반 행위 분기별 현장 점검(농식품부·지자체, '24~'27.2)
 - **(점검 대상)** 개식용 목적 신규·미신고 운영, 이행계획서 미이행, 사육건 개체 관리, 전·폐업 지원 후 개식용 운영 회귀 여부
 - * 농장주 이행계획서에 따른 증·입식 중단, 사육건 개체 관리 현황 및 사육규모 감축 등을 통한 전·폐업 이행 등을 중점 점검
 - **(조치 계획)** 위반 행위 적발 시 이행조치명령 및 영업장 폐쇄 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법적 의무 이행 유도

3 | 사회적 공감대 확산

가.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 **(캠페인)** 개식용 관련 문제의식 공유 및 개식용 소비 종식 등을 위해 다각적 캠페인·홍보 추진(농식품부, '25~)
 - 동물보호의 날(10.4) 연계 및 동물보호단체 협업 하 개식용종식 주요 정책 및 보호동물 입양 장려 등 캠페인·홍보 추진
 - * 개식용종식 배경, 법령 주요 내용, 기대효과, 보호동물 입양 필요성 등
 - **식생활 교육 연계** 주요 정책 홍보·안내 및 **식문화 개선 캠페인** 추진
- **(교육)** 생애주기별 맞춤형 동물복지 교육 체계*와 연계하여 개식용종식 관련 교육 콘텐츠(배경, 주요정책 및 기대효과 등) 확산(농식품부, '25~)
 - * 동물보호·복지 교육 포털(<http://apms.epis.or.kr>), 찾아가는 '동물사랑배움학교' 등
- **(지역별 홍보)** 이행 시기별 정부·지자체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업계가 집중된 지역 중심 개식용종식 정책 홍보(농식품부·지자체, '25~)
 - * 종식 이행 후반부('26년 이후) 개식용 업계 다분포 지역 및 재래시장 위주 중점 홍보
- **(해외 홍보)** 외신 홍보, 국내외 인플루언서 협업* 등을 통해 개식용종식에 따른 긍정적 효과 등 홍보 콘텐츠 해외 확산(농식품부, '25~)

나. 종식 이후 단속 강화

- '27.2.7일 이후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 단속 철저(관계부처·지자체, '27.2~)
 -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반** 구성 및 매년 여름철 집중 단속 기간 운영을 통해 위법 현장 적발
 - 「개식용종식법」 포함 여타 법령* 위반 음성적 개식용 목적 운영 행위 단속 및 엄중 조치
 - * 「농지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간축법」,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

VI. 추진 기반

1 | 법령 정비

- 「축산법」 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동물보호법」으로 개 사육 행위 등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농식품부, '27)
- 폐기물 처리비용 수입 목적의 음식물류폐기물 가축 급이를 방지하고 적정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환경부, '27.2)
-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기존 신고에서 허가 대상으로 변경

2 | 거버넌스 구축

- 원활한 현장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지방 실무협의체, 시도 및 시군구별 개식용종식 TF 등 「지방협의체」 운영(농식품부·지자체, '24.上~)
- 종식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감 포럼(가칭)」 운영(농식품부, '24.下~)
 -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입장 간 논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종식을 달성하기 위한 소통·홍보 전략 모색

VII. 재정 투융자 계획

- '25년 기준 잠정 총 1,09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예정
 - ※ 향후 3년간('25~'27)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
 - '25년 농장주 전·폐업 지원을 위해 폐업이행촉진지원금 562억원,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철거비 70억원 등 총 972억원 지원
 - '25년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을 위해 시설물 잔존가액 67억원, 철거비 42억원 등 총 108억원 지원
 - '25년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의 전업지원을 위해 총 10.4억원 지원

VIII. 추진일정

정 책 과 제	일정	주관
1.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가. 농장주 및 도축상인 전·폐업 지원	'25~	농식품부
• 농장주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원	'25.1~'27.2	
• 시설물 잔존가액 및 철거 지원	'25.1~'27.2	
• 전업 시 시설·운영자금 저리융자	'25~	
나.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 전·폐업 지원	'24~	관계부처
•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24~	중기부
• 소상공인 전직장려수당·재창업 사업화자금 지원	'25~	
• 전업 시 시설·물품 교체 지원	'25.1~'27.2	
		식약처

2.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가. 전·폐업 컨설팅	'24~	관계부처
• 전업 희망 농장 대상 현장 맞춤형 컨설팅	'24~	농식품부
• 전업 업종 관련 식품 위생 정보제공 및 컨설팅	'25~'27	식약처
• 폐업 소상공인 지원	'24~	중기부
나. 식용 목적 사육견 관리	'24~	농식품부
• 농장주 사육규모 감축 등 이행 점검	'24.9~'27.2	
• 소유권 포기권 보호·관리	'24.9~	
•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	'24~	
다. 종식 이행점검	'24~	
• 개식용종식법 위반행위 분기별 현장점검	'24~'27.2	

3. 사회적 공감대 확산		
가.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25~	농식품부
• 개식용 소비 종식 캠페인 및 홍보	'25~	
• 동물복지 가치 인식 제고 교육	'25~	
나. 종식 이후 단속 강화	'27.2~	
• 종식 이후 식용 목적 운영행위 단속 및 조치	'27.2~	

붙임 3 | 개식용종식위원회 개요

- (배경) 「개식용종식법」 시행('24.8.7) 후 개식용종식을 위한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수립·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
- (법적 근거) 「개식용종식법」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 (역할) 개식용 관련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등 심의(법 제8조제2항)
- (구성) 위원장(차관) 1명을 포함하여 관계 부처 및 관련 업계 대표,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24명
- 개식용종식위원회 위원 명단** * 임기: '24.9.23~'26.9.22

연 번	구 분	성 명	소 속
1	위원장	박범수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	당연직 (7)	박정훈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3		강기룡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4		조영진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5		김도형	•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관
6		유승광	•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7		황영호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8		김성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9	위촉직 (16)	주영봉	• 대한육견협회 회장
10		조환로	• 육견단체TF팀 회장
11		장인실	• 육견권리보호연합회 회장
12		이귀재	• 전국육견상인회 회장
13		박동석	•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회장
14		전강식	•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15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16		전진경	• (사)동물권행동 카라
17		강정화	• (사)한국소비자연맹 회장
18		김연화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19		정민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동물복지연구단 단장
20		허주형	• 대한수의사회 회장
21		이범준	•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22		전향숙	•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
23		김도희	•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24		최진식	• 한국갈등학회 회장

□ 제1차 회의 개요

- 목 적 :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안) 심의
- 일 시 : 2024. 9. 24.(화), 14:00 ~ 16: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1907호)
- 참 석 :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위원장), 관계부처, 관련 업계 대표,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총 24명
- 현장 사진

